

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3.09.16.
개정 2014.11.06.
개정 2015.01.08.
개정 2017.09.07.
전부개정 2019.06.1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순천제일대학교 학생상담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센터의 기능,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센터는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과 전인적 발달, 미래사회 유능한 직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- ①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
- ②상담 관련 교육, 연구, 자문 등 지원
- ③성고충 상담 및 위기 상담 지원
- ④상담 관련 유관기관 업무 지원
- ⑤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
- ⑥학생상담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사무
- ⑦다문화 및 북한이탈자 등 소수집단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지원

제2장 조직

제4조(조직 및 업무) 센터의 조직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센터에는 심리상담부, 학생생활연구부, 성고충상담부를 둔다.
- ②심리상담부는 대학생활 부적응, 심리적 건강 등에 관한 상담과 검사, 그 밖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학생생활연구부는 학생들의 생활 실태 등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- ④성고충상담부는 대학 내 성희롱과 성폭력 등 상담, 4대 폭력(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) 예방 교육 등 성고충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.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인력) 센터의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전문상담사는 전문상담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총장이 임명한다. 전문상담사의 자격요건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.
- ③ 전문위원은 전임교원이나 전문상담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.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센터에는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. 자격요건은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자 이상이며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센터장이 위촉한다. 객원상담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센터의 운영 계획
- ② 센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③ 예결산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7조(구성 및 직무) ①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.
- ③ 센터 각 부의 전문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
- ④ 운영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전문상담사로 한다.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한 학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위기학생을 위한 비상대책회의) 센터는 재학생의 위기 상황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① 재학생의 위기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학생 자신이나 주변 인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
 2. 자살, 폭력, 중독 등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센터의 전문적인 개입을 거절한 경우

3. 기타 위기 상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②비상대책회의는 학사운영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학생상담센터장, 위기학생의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, 학생지원팀장, 전문위원, 전문상담사로 구성한다.
- ③비상대책회의는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비상대책회의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⑤비상대책회의의 간사는 전문상담사로 한다. 간사는 비상대책회의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4장 상담윤리

- 제10조(비밀유지 및 한계)** ①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상담 기록과 상담 내용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- ②위기상황에서는 상담의 비밀유지 한계를 정한다.
 - ③비밀유지 및 한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상담센터 윤리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